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63
----------	-----

2020. 12. 18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2월 8일

-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기금 일몰제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0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7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“2020. 12. 31.까지” 에서 “2025년 12월31일까지” 로 5년을 연장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는, 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경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- 청소년육성기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6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 등을 위해 1979년 설치된 것으로,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기금은 아님.

#### <청소년 기본법>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**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·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결정일: 9.11)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임.

**<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>**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**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**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**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**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**지방재정법**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다. 종합의견**

- 본 조례안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법률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되었고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도 없음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현황

□ 개 요

- 설치근거 : 청소년기본법 제56조  
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목 적 :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
- 지원내용 :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대상 학자금, 직업훈련, 자립 정착금 지급
- 재 원 : 도 출연금, 이자수입 등

□ 연도별 지원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 산 액	인원	지 원 액	비 고
2016년	12,000	21	10,500	장학금 지원 (1인당 50만원)
2017년	11,000	22	11,000	
2018년	12,500	25	12,500	
2019년	15,500	31	15,500	
2020년	20,000	40	20,000	

□ 연도별 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수입내역(A)				지출내역(B)		잔액 (C=A-B)	연도말 조성규모
	계	전입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사업비		
'16	210,821	200,000	9,432	1,389	10,500	10,500	200,321	1,179,424
'17	311,793	300,000	10,434	1,359	11,000	11,000	300,793	1,480,217
'18	11,327		11,327		12,500	12,500	-1,173	1,479,044
'19	23,294	-	20,395	2,899	15,500	15,500	7,794	1,486,838
'20	26,602		25,246	1,356	20,000	20,000	6,602	1,493,440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30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따른 기금 일몰제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0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7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